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32
------------	------

2025년 6월 20일
교 육 위 원 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5월 26일, 남창진 의원
2.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3. 상정일자 :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5년 6월 20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남창진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교육청에서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 회의의 운영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근거와 서울시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중 관련 공무원들이 위원회 회의와 중복되

지 않도록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가 전문성 · 민주성 · 투명성 ·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위원회 운영 시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 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는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

Ⅲ.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남창진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732호로 발의되어 2025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해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98개의 각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 법률과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이를 통해 각종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런 면에서 동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구성, 위원의 공모, 회의 운영, 위원회 관리 및 정비 등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에 대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능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조례는 현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 및 이해관계자의 사전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척 등 규정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이 미비한바,

동 개정조례안은 이를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기본원칙에 대한 검토(안 제3조)

- 안 제3조는 교육감에게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위원회가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동 조례는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 틀을 규율하고 있으나, 다양한 위원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공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이 단순 자문기구의 형식적 기능을 넘어서 실질적 속의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검토(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는 위원이 안건 당사자와의 관계에 따라 자동적으로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당사

자가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며, 제3항에서는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현재 동 조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하는바, 이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외부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더욱이 각종 법령에서는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에서도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제정할 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¹⁾.
- 이처럼 안 제10조는 위원회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이나 사적 관계로 인한 공정성 훼손 가능성을 예방하고, 위원 스스로의 윤리적 책임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회의 운영에 대한 검토(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서울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며(안 제3항), 회의가 특정 위원에 의해 왜곡(안 제4항)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대리 참석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규정(안 제5항)하고 있습니다.
- 우선 안 제3항은 지방의회의 회의 일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일정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며 위원회

1) '2022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법제처, 226쪽 참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고 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이는 바,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안 제4항과 안 제5항은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특정 위원의 영향력에 따른 편향이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위원 개개인의 책임 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적절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대리참석 금지는 회의 운영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규정으로, 현재 동 조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그 취지 및 해석상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기술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처럼 동 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회의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는 실효성 있는 조항으로 판단되며, 실제 위원회 회의에 있어 원활한 회의 운영과 위원 간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6884, 2025.6.4.).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심의·의결 기한 등으로 회의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3조(기본원칙)</u>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u>제3조 (생략)</u>	<u>제3조의2</u> (현행 제3조와 같음)
<u>제7조(위원회의 구성)</u> ① 위원을 위촉할 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u>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u>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u>제7조(위원회의 구성)</u> ① ----- ----- ----- <u>교육감</u>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u>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에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

제10조(회의의 운영) ①·②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
다.

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심의·의결기한 등으로 회의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